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5/ 4/ 16 통권 1723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 사례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불확실한 경영환경의 극복 : 이해관계자 중심경영
- 임직원의 지방출장비는 적격증빙 입수하여야 법인 비용으로 인정됨
- 국세청이 꼭 짚어 주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 신고에 반영하세요
-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 사례
- 美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대책 발표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유예기간 적용받은 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적용 불가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잉여금배당, 감액배당, 무상증자배당방법과 과세여부>

개념구분	이익잉여금배당	자본준비금배당	자본전입무상증자
개념정의	회사의 누적순이익, 잉여금, 임의적립금에서 매년 정상배당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헐어 일시배당금 지급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등의 준비금을 신규자본금 증자
근거규정	상법 제458조·462조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2011년 신설	상법 제461조
배당재원	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이 자본금 1.5배 초과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등
자금영향	현금예금 감소	현금예금 감소	현금예금감소 안 됨
주주자금	회사에서 지급	회사에서 지급	추가주식의 장내 양도
회계처리	(차) 잉여금 100 (대) 예금 100	(차) 자본준비금 100 (대) 예금 100	(차) 자본준비금 100 (대) 불입자본금 100
배당과세	배당소득과세 (종합소득 합산)	과세안됨(개인) 법인은 익금산입	과세안됨(개인), 법인은 익금입
적용경우	모든 법인	할증발행한 상장회사 등	모든 법인 (주로 비상장사)

(안사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사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진조세정보
02-829-7575

안
세
재
경
저
널
회
원
용
·
2
0
2
5
년
4
월
1
6
일
(
수
)
·
주
간
제
1
6
호
·
통
권
제
1
7
2
3
호
·
성
실
신
고
핵
심
포
인
트
·
구
독
기
원
·
출
판
3
0
0
0
0
원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23호 / 주간 16호

2025. 4. 16.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임여금 배당, 감액배당, 무상증자배당방법과 과세여부	표지
CEO의 경영산책	불확실한 경영환경의 극복: 이해관계자 중심경영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퇴직한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균등한 보너스 -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 해외법인수출 - 전대 임대업 국문 처리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임직원의 지방출장비는 적격증빙 입수하여야 법인비용으로 인정됨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양도세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 -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대응대책	9 10
직장인Survival	독서의 장점	11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유권해석)	-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불가 (기준법규법인-114, 2024.08.30) - 특수관계법인의 임직원의 자녀에게만 유리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증령§38⑧(2)에 해당하고, 이 경우 상증령§40①(5)에 따라 증여가액(제공된 재산가액)을 산정함 (기준법규법인-196, 2024.06.11)	12 13
세정뉴스와 해설	美, 글로벌 상호관세 전격 발효... 한국 포함 57개국 대상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유예기간 적용받은 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적용 불가함	12
세무정보	- 국세청이 꼭 짚어 주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 신고에 반영하세요 -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 사례 - 美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대책 발표	15 24 35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4

불확실한 경영환경의 극복 : 이해관계자 중심경영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무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홈플러스 주주사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며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P는 Governance에 대하여 "주권자의 정책 결정에서부터 이사회, 관리자,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 참여자들의 권리와 책임 분배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체계"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거버넌스를 단순히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또는 기업 오너의 의사결정이나 기업의 구조적 문제만이 아님을 함의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및 책임과 의사결정에 대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CEO 경영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윤리성이다. 여기서 사회의 반응과 사회적 영향력이 결정된다"*는 제언을 깊이 성찰하여야 할 시점이다.

* 김화진, 제3판 이사회 경영: 지배구조 이론과 사례, 서울 더벨, 2023. 4. p.15.

과거에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충분히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여겨졌다. Friedman(1970) 교수는 기업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경영자는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주주에 대한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다. 그는 기업의 단 하나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게임의 룰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자원을 사용하고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계획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The New York Times Magazine, September 13, 1970, Section SM, Page 17. Copyright © 1970 by The New York Times Company.

이러한 사고는 주주중심적 경영패러다임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엄밀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경제적 책임의 한 단면만을 강조한 것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면서 경제적 책임 이외에 기업이 국가, 지역사회에 대하여 이행할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활동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종업원이나 지역사회의 희생(예: 환경파괴)을 통하여 달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공급업자와 이익을 적절히 공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요구가 기업에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실제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공급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저렴한 제품을 외면하여 결국은 기업의 수익성과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단순히 기업이 수동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의무의 개념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기업의 가치창출 개념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주주를 포함한 기업 이해관계자와의 균형 잡힌 가치창출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즉 이해관계자중심 경영(stakeholder primacy) 패러다임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이해관계자 이론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요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자 이론은 조직전략과 윤리의 경영관리개념이다. 이해관계자이론의 기본 사고는 조직의 성공이 조직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객, 종업원, 공급업자, 지역사회, 자본공급자, 기타 핵심그룹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Freeman, 2002).

* R.E. Freeman and Phillips, R.A. 2002. Stakeholder Theory: A Libertarian Defense. Business Ethics Quarterly 12(3):331-349.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프리만이 주창한 이해관계자 이론을 근거로 기존의 주주중심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프리만은 전통적인 자본주의가 특정 이해관계자가 우월하고 지배적이라는 가정과 함께 시장참여자들이 자기이익(self-interest)만을 추구하며, 도덕과 비즈니스가 상호 독립적이며, 모든 경제주체가 제한적인 자원을 두고 항상 경쟁함으로써 경제가 발전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주주중심 자본주의의 핵심개념이 되어왔다. 프리만은 이러한 전통적 자본주의 사고는 이해관계자간의 협력관계나 윤리를 배제하고 지나치게 주주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의 주주나 투자자 이외에 고객, 종업원, 공급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한다. 프리먼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6가지 원칙으로 이해관계자 협력의 원칙, 이해관계자 참여원칙, 이해관계자 책임의 원칙, 복잡성의 원칙, 지속적인 창조 원칙, 새로운 경쟁(win-win)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Freeman(2007), Stakeholder Capitalism, Journal of Business Ethics 74:303-314.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에드워드 프리먼 교수의 다음의 주장을 성찰할 시점이다.

“주주자본주의는 세계가 안정적이고 확실성이 클 때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더욱 더 불안정적으로 변하고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과 동시에 협업해야 한다. 기업의 목적은 이익 창출이 아니다. 이익은 기업이 이해관계자들과 얼마나 관계를 잘 쌓고 유지를 잘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다. 불확실성이 크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주주에게만 관심을 둔다면 기업이 실수를 하기 쉽다. 주주가치 상승을 위해 특정한 업무 과정을 없애 비용을 절감한다고 가정해보자. 비용을 절감해 주주에게 돌려줄 가치가 높아질 순 있지만 업무 절차 관련 안전성은 떨어진다. 즉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한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다.*

* 주주만 신경쓰는 회사 불확실한 세계에서 '회청' 이해관계자 힘 합쳐야 안정적 기업성장 '쾌청' [Cover Story] - 매일경제: 상기 기사를 분석 요약한 것임.

퇴직한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균등한 보너스

- Q**
1. 2025.01.03일 직원 퇴사
 2. 대표이사가 경영성과가 좋은 관계로 계량적 측정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500 지급하기로 2025년 4월 1일에 결정함.
 3. 기준은 2024. 12. 31까지 재직한 직원 모두에게 지급
 4. 2025.01.01 이후 퇴사한 직원에게도 모두 지급하기로 함.
 4. 지급은 2025.04.25에 모두 지급 예정임.

질의)

1. 2025년 1. 01이후 퇴사한 전 직원에게 직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너스 \$500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근로소득 지급 후 원천징수 하고 근로소득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보너스 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2. 기타 tax issue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A 퇴직자에게 퇴직이후 지급하는 보너스 등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 Q**
- 우선, 해고 예고 수당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금 (퇴직소득) 으로 보나요?
만약 퇴직금으로 판단된다면, 회사는 퇴직금 지급 방식이 DC형으로 1년마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해고 예고 수당이 발생하였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
해고 예고 수당에 퇴직 소득세와 주민세를 차감해야하는지와 퇴사한 직원이 개설한 퇴직연금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급여통장으로 지급해야 해도 되는지..
보통 DC 형인 경우 간사로 1년마다 지급하고 있는데 아니면 직원이 아닌 간사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1. 해고예고수당은 귀사의 의견대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2. 퇴직금을 IRP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지 여부는 귀사와 퇴직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퇴직자가 요구하는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외법인수출

Q 당사에서 생산하여 해외A국에 납품하는 제품수출을 당사 해외지분투자법인(B)에서 생산해서 해외A국에 납품을 할 경우에 당사에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우선 해외A국으로 부터 수출대금은 당사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경우 폐사는 중간역할만 하는 상품매출로 해야 할지?
그리고 해외법인 B에 대한 가공비용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요?

A 귀사에서 수출관련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귀사가 직접받지만 수출물품을 해외의투자법인에서 생산하는 경우, 유상사급거래인지 무상사급거래인지 아니면 단순히 완성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거래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귀사의 경우 B에게 원재료를 제공하고 단순 임가공공역을 제공받는 거래인지, 아니면 B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거래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구입후 판매하는 거래라면 상품매출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은 세법의 해석에 대한 국세청의 판단으로 회계처리 사항은 유권해석이 없습니다.

전대 임대업 국문 처리

Q 당사에서 현재 임대 하여 사용하는 당사 창고에 대한 임대료 중 일부를 제 3자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전대임대)
현재 계약은 완료되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때, 이 전대임대로 인한 이익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원가 비용 차감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A 전대임대로 인한 이익은 잡수입으로 반영하시면 되며, 일회적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대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에 임대사업 추가하여야 합니다.

임직원의 지방출장비는 적격증빙 입수하여야 법인비용으로 인정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해외출장이나 지방출장을 가서 지출하는 버스요금·택시요금·기차요금·항공료 등의 교통비와 출장지에서의 식대·숙박비 등은 여비교통비 계정에 반영하여 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함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출장관련 비용을 여비교통비가 아닌 출장업무를 수행한 해당 임직원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시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각각의 세무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출장관련 비용을 여비교통비로 반영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함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출장비를 ‘여비교통비’라는 계정에 반영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물론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했어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출장기간 동안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에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정상적인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하면서 불이익도 없애는 방법이다.

♣ 법인46012-3088, 1996.11.6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장비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처리해도 됨

출장비를 법인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방법 이외에도 해당 임직원의 실비변상적 급여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사내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출장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를 해당 임직원의 비과세 소득에 반영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임직원에게 지급한 출장비 전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내의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만 비과세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과도한 출장비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46013-2370, 1998.8.22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또한 비과세 대상인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매일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도 시외출장에 따른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출장비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의 금액이라면 역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 서일-1016, 2005.08.29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양도세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

구분	비과세	감면
개념	과세권 포기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 경감
세금발생 유무	없음	감면세액의 20% 발생 (농특세)
세금신고 유무	없음 (단, 고가주택 비과세는 신고)	신고의무 있음
사례	1세대1주택, 일시적2주택 비과세 등	미분양 주택 양도세 100% 감면 등

화

표창기업에 대한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분야	인센티브
세무·회계	① 5종 세제지원 ②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③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
상장·공시	④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⑤ 거래소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 ⑥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 등) 유예
홍보·투자	⑦ 거래소 공동IR 우선참여 기회 제공 ⑧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美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대응대책

기업 경영위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유동성 확대 13조 → 15조원 • 현대기아차 협력 중소기업에 1조원 지원프로그램 •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관세 최대 1년 연장
수요진작·신시장 창출 등 美 관세 충격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보조금 : 제조사 할인액 비례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20~40 → 30~80%) 및 기간 연장(6 → 12월) • 수출바우처 2400억 → 3400억원 • 연말까지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 확대·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투자환경 개선·미래 기술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 등 기술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해 세액공제 • 올 상반기 '자율주행 로드맵' 올 3분기 '미래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



내년 출시 예정인 IMA 상품 예시(안)

구분	(저수익) 안정형	(중수익) 일반형	(고수익) 투자형
만기	1-2년(폐쇄형)	2-3년(폐쇄형)	3-7년(폐쇄형)
보수차감 전 목표수익률	연 4.0~4.5%	연 5.0~6.0%	연 6.0~8.0%
운용보수 (모집금액 대비)	20~50bp	50~80bp	80~100bp
성과보수	기준수익률(3.0%) 초과수익의 30%	기준수익률(4.0%) 초과수익의 30%	기준수익률(5.0%) 초과수익의 40%
보수차감 후 목표수익률	연 3.5~3.7%	연 4.2~4.9%	연 4.8~6.6%
주요 투자대상 (상품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급 이상 기업대출, 회사채 • A2 급 이상 전단채 • 글로벌 BBB급 이상 국외기업 회사채, 인수금융 대출 (우량 대/중소기업, 국외 우량기업 투자, 낮은 수익 변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BB급 이상 기업대출, 회사채 • A3급 이상 전단채 • 글로벌 BB급 이상 국외기업 • 국내외 우량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우량 중견/중소기업, 중수익 대체투자, 일관적인 수익 변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중소/벤처 지분, 회사채 등 • 글로벌 B급 이상 국외기업 회사채, 인수금융 대출 • 국내외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중소/벤처 모험자본 중심, 고수익 대체투자, 높은 수익 변동성)



독서의 장점

지식과 관점 강화

책은 철학과 심리학부터 기술과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걸쳐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의 보고입니다.

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포털 역할을 하여 독자가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고 즉각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 성찰과 개인적 성장

생각을 자극하는 이야기, 설득력 있는 캐릭터, 통찰력 있는 주제는 자기 성찰을 촉진하여 개인이 자신의 감정, 동기 및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성찰적 여정은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여 개인이 도전에 직면하고, 자신의 강점을 연마하고, 더 나은 버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신 자극 및 인지 능력

독자가 복잡한 줄거리를 탐색하거나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두뇌는 계속 활동하여 기억력 유지 및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더욱이, 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는 인지 저하의 위험을 줄이고 정신적 예민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및 휴식

독서는 일상의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코티솔 수치를 낮추어 휴식을 촉진합니다. 현실도피 감각을 키우고 독자를 다른 세계와 경험으로 안내하여 정신 건강을 증진합니다.

권한 부여 및 영감

책에는 개인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실어주며 동기 부여와 회복력을 심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 전기, 자조 서적은 종종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를 공유하며 개인 역량 강화의 촉매 역할을 합니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유예기간 적용받은 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적용 불가함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불가

기준법규법인-114, 2024.08.30

질 의

-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분할기일: 2019.10.1.)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골판지용 원지 제조업을 영위함
 -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함
- B법인은 1996과세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았음

질의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 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4203, 2024.09.25

질 의

- 질의인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이하 “쟁점 전환금액”)하려고 함
 - 추가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40의2 제2항 다목의 규정을 충족하는 거주자로서,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을 뺀 금액 중 일정금액을 연금계좌로 납입(연금주택차액분 납입액)하려고 함

질의

- (질의1)*『소득세법』 59의3③에 따른 전환금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과세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118의3에 따른 전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소득세법 시행령』 40의2② 다목에 따라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을 뺀 금액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이하 “연금주택차액분 납입액”)이 동법 59의3①에서 규정한 공제한도 적용대상인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질의1)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주택차액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른 한도액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법인의 임직원의 자녀에게만 유리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증령§38③(2)에 해당하고, 이 경우 상증령§40①(5)에 따라 증여가액(제공된 재산가액)을 산정함
기준법규법인-196, 2024.06.11

■ 질 의

- (질의1) 「A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B공익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대부분이 「A법인의 임직원의 자녀」인 경우,
 - 일반 장학생이 있음에도, 상증령 38③(2)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 해당하는지
- (질의2, 질의1이 2안일 경우) 증여가액 산정방법

■ 회 신

(질의1)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영 제38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며(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직원 자녀" 외에 일반 수혜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공익법인이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같은 영 제38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같은 영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의 정관상 장학사업의 내용, 장학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실질과 지급내역 및 지급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美, 글로벌 상호관세 전격 발효... 한국 포함 57개국 대상

미국이 전 세계 57개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공식 발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 가운데 개별 상호관세 조치가 9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 현지시간, 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 발효됐다. 기본관세 10%는 앞서 지난 5일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에 부과된 관세율은 25%로,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태국(36%),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4%), 캄보디아(49%), 남아프리카공화국(30%), 레소토(50%) 등이 상호관세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치 이후 글로벌 증시는 크게 흔들렸다. 상호관세 발표 직후 이틀간 뉴욕 증시는 10% 급락했고, 이로 인해 약 6조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일부 국가는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으며, 미국 내에서도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반대 입장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예정대로 상호관세를 강행했다.

한편, 중국에 대한 관세는 발표 직전에 대폭 상향됐다. 당초 34%였던 중국 상호관세율은 중국이 동일한 수준의 '맞벌 관세'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50%를 더해 총 84%로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트럼프 취임 이후 중국에 부과된 누적 관세는 총 104%에 달하게 됐다. 여기에 이전 행정부에서 유지된 평균 20.8%의 관세까지 포함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실질 관세율은 125%에 이른다.

“부정적 감사의견 때 무조건 감리? 국영기업?”...회계전문가들 우려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CFR)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일 경우, 자동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대상이 되는 현행 제도는 감사인에게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공인회계사들 사이에서 본격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 지난 2021년 관련 규제가 도입된 뒤 2~3년간의 제도기간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미국처럼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에 대한 자동 감리가 시행될 예정인데, 피감기업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한하는 감사인'으로서 보수적으로 의견을 내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KICPA)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부설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은)는 오는 24일 발표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회계학회(회장 김갑순)에 의뢰해 발간한 이 보고서는 이날 온라인세미나(zoom)를 통해 공개된다.

기자가 KICPA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모든 대상 회사에 대해 올해부터 본격 감리를 실시한다.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2025 회기년도 감사의견이 나오는 내년부터 본격 자동 감리가 시행되지만, 대부분 6월 결산 법인인 금융회사들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부정적인 감사 의견을 받으면 자동으로 감리 대상이 된다.

자율규제 성격의 코드(UK Corporate Governance Code)를 적용, 기업이 '스스로 설명(comply or explain)'하도록 내부통제 구조를 유도한다. 내부회계 수준이 공시와 시장평가를 중심으로 드러나도록 유도하는 반면 강한 행정적 제재는 드물게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제재 위주의 감독과 공시가 혼재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개선보다는 처벌 또는 불이익에 중점이 있다는 비판이 대표적인 지적이다.

KICPA는 이번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재 중심의 감독 방식보다는 시정조치와 공시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감독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감사의견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감리에 착수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에 비해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위험기반' 또는 '표본 감리'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시정조치 중심의 유연한 감독기조를 확립해야 기업과 감사인이 실질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취지다.

국세청이 꼭 짚어 주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 신고에 반영하세요

- 국세청, 2025. 4

- 산불 피해지역 소재 사업자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적극 지원
- 65만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금)까지 예정신고,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

①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일반)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개* 등 총 248만 개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리니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직전 과세기간('24년 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예정고지 세액 50만 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5.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예정고지 세액은 홈(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1544-9944)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② 예정신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5만 개 법인사업자*는 '25. 1. 1.부터 3. 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신고대상: 전년 동기('24.1기 예정 62.5만 개) 대비 2.5만 개 증가
-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특히 신중·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하여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 도움자료 제공현황: ('24.1기 예정) 63종 19.6만 개 → ('25.1기 예정) 69종 24.7만 개 사업자
-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 (납 세 자)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세무대리인) 홈택스 → 세무대리 · 납세관리 → 세무대리공통조회 → 신고도움 서비스

③ 신고편의 개선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국세청이 보유한 24종 자료를 신고서에 채워서 제공
- 한편, 납세자 및 일선 직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먼저 ①새로운 홈택스 신고화면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코치마크* 형태로 도움말을 제공하고, ②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신고안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코치마크(Coach Marks): 앱을 개편하거나 처음 접속하는 사용자를 위해 반투명으로 화면을 덮어 버튼이나 메뉴에 대한 기능을 설명
 - 또한, ③임대공급가액명세서·현금매출명세서 등 주요 필수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단에 우선배치 하였고, ④입력/수정 버튼을 생성하여 신고서 입력 항목 및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④ 세정지원

-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환율상승 및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소재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예정신고 한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하겠습니다.
 - * 예정고지 제외된 사업자는 1월~6월 실적을 '25.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함
- 아울러,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5.10.) 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금)까지 지급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

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5 신고검증

- 신고 후에는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여 총 359억원(사업자 당 약 14백만 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및 사업무관 비용 등을 부당공제하거나, 오피스텔 매입(신축)으로 환급 후 주거용(면세)으로 사용하였으나 매출누락한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되었습니다.

| 자주 실수 또는 잘못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

- ① (비영업용 승용차) 고가의 슈퍼카를 렌트하고 임차료 등 유지비용을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 및 임차, 유지비용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추가징수
 - ② (사업무관 비용) 대표자 개인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법무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추가징수
 - ③ (업무추진비)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 후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거래처 접대목적 및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비용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추가징수
 - ④ (면세전용) 오피스텔을 매입(신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주거용(면세)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매출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추가 징수
-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홈택스 신고 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니
 -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및 납부 방법

1. 예정고지 조회 방법

- ①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도움자료 조회 화면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 및 고지 세액 확인
 - (고지대상) 홈택스 ID·PW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직접 조회
 - (고지세액) 홈택스 ID·PW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메뉴에서 직접 조회
- ② 홈택스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 확인
 - 홈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 메뉴에서 조회
- ③ (ARS) 개인사업자 대상 ARS(1544-9944) 예정고지세액 확인
 - ☎1544-9944 → 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 본인 확인(주민등록번호#)→ 이동통신사 본인 인증 후 이용

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 (00:30~23:30, 07:00~23:30), 평일 (00:30~23:30, 09:00~23:30, 09:00~22:00)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신고도움자료 제공
-------------	--------------------------------

1.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li style="padding-left: 20px;">※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이용시간: 4. 1. ~ 4. 25. 매일 06:00 ~ 24:00
손택스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li style="padding-left: 20px;">※ 회원 접속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시간: 2025. 4. 25.(금) 18:00까지

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자료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전문직	•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 임대·차 개시 자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 골프예약앱 수수료 등 지급내역, 현금수입업종 기타매출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건설업자 아파트 시설공사 실적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SNS 마켓 등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홈택스 접근경로

- (납세자)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세무대리인)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 과세기간 입력·수입납세자 조회



참고 3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제공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 (총 30종)	제공일정	비고
1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25. 4. 1.	
2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5. 4.11.	
3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5. 4.14.	
4		신용카드 매출	25. 4.15.	
5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5. 4.15.	
6		판매·결제대행자료	25. 4.16.	
7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25. 4. 1.	
8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5. 4. 1.	
9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5. 4.14.	
10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5. 4.15.	
11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5. 4.15.	
12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5. 4.15.	
13	공제	직전 기 재고매입세액	25. 4. 1.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 공제세액	25. 4. 1.	
15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5. 4.11.	
16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 납부세액	25. 4.15.	
17		재활용폐자원·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5. 4.15.	
18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확정
19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확정
20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확정
21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확정
22		재고납부세액	-	확정
23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 기 입차인 명세	25. 4. 1.	
24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5. 4.14.	
25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5. 4.14.	
2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5. 4.14.	
27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5. 4.15.	
28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5. 4.15.	
29		수정신고·경정청구 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 후	
30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확정

참고 4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지급)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월 25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고(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2일(금)*까지 지급 예정

* 법정 지급기한인 '25. 5. 10. 보다 8일 앞당겨 지급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포천시 이동면,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 ⑦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 ⑧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대상자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

* [홈택스] ① 증명·등록·신청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손택스] ① 전체메뉴 → ②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직권연장)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소재 사업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예정신고 한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
- * 경남 산청군·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 예정고지 제외된 사업자는 1월~6월 실적을 '25.1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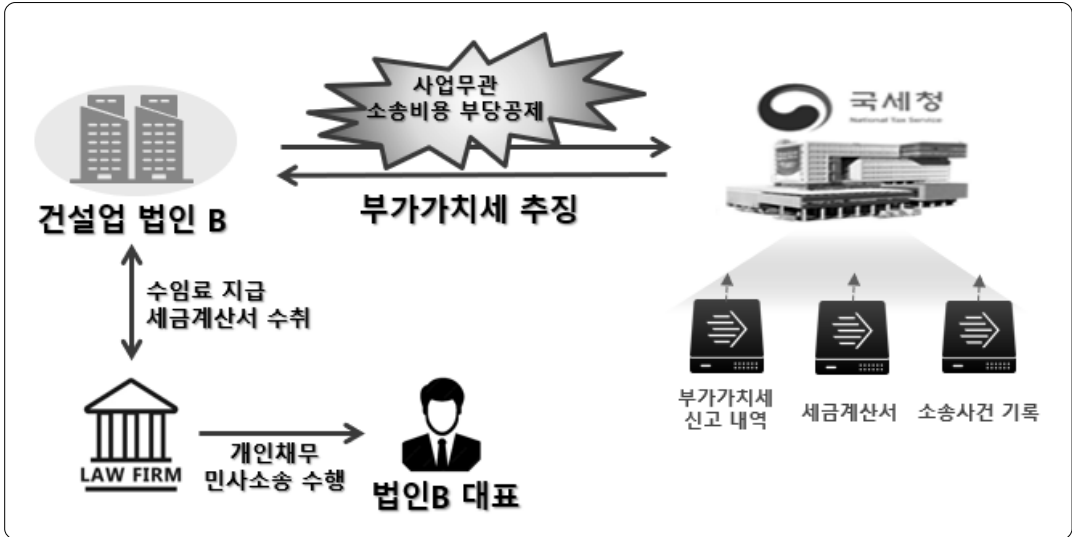
참고 5 [신고내용확인·부당환급] 주요 추정사례

사례 1 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슈퍼카를 렌트하여 임차료 등 유지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신청한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제조업을 영위하는 A 법인은 렌트회사에 지급한 렌트료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유류비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 매입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하는 고가의 슈퍼카를 렌트한 것으로 확인
 - 법인은 사업과 무관한 슈퍼카를 렌트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해당 렌트료 및 유류비 전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징
- 올바른 신고 방법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은 운수업 등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고, 사업과 무관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 이 경우, 차량을 렌트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사례 2 **법인 대표의 개인 소송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신청한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건설업을 영위하는 B 법인은 법무법인에 소송 관련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함
 -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소송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법인 대표의 민사소송(개인적 채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 해당 변호사 수임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징
- 올바른 신고 방법
 -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므로
 - 사업과 관련 없는 소송관련 비용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신고하여야 함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 사례

- 국세청, 2025. 4

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함



- ◎ A주택을 보유하던 김국세씨는 B오피스텔 취득 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제한하였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해옴
 - 김국세씨는 A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국세청은 김국세씨가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 ※ 양도소득세 : 신고 0원 (비과세 O) → 추징 121백만원 (비과세 X)

◎ 조사내용

- 현장조사를 통해 B오피스텔은 별도 출입문이 있고 내부에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전·가구도 비치되어 있는 등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임차인이 다니는 회사는 B오피스텔 근처인 반면,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회사와 거리가 멀어 현실적으로 주소지에서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실도 파악하였습니다.
- 또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B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 ⇒ 국세청은 B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상 “주택”

에 해당한다고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 **체크포인트**

- 소득세법상의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2조의4)
따라서, 공부상 주택이 아닌 건물(오피스텔, 레지던스, 근린생활시설 등)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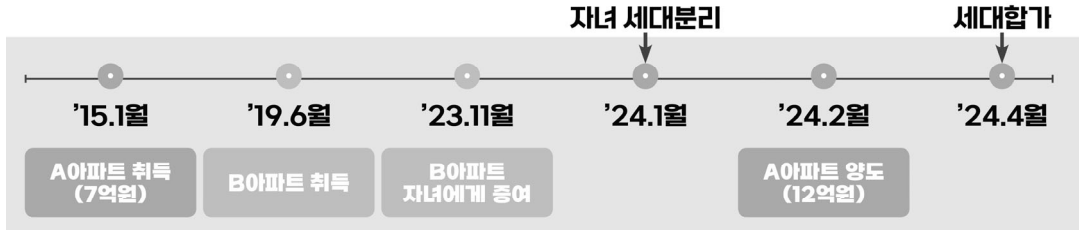
관련 법령(소득법§88, 소득령§152의4)

-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함

관련 판례(대법원-2004-두-14960, 2005.4.28.)

-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02. 주민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라면 별도세대로 볼 수 없음



- 2주택자(A아파트·B아파트)인 김대한씨는 대학생 자녀에게 B아파트를 증여하고, 자녀의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겨 세대 분리함
 - 이 후, 김대한씨는 A아파트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다시 자녀와 세대를 합가함
 - 국세청은 김대한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자녀를 세대분리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 ※ 양도소득세 : 신고 0원 (비과세○) → 추징 151백만원 (비과세X)

조사내용

- 김대한씨의 자녀는 대학생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어 세대분리 이후에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아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한편, 김대한씨는 자녀의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사실에 대해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 자녀가 친척집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 ⇒ 국세청은 주민등록 상 세대분리한 자녀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므로 A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1세대가 A아파트·B아파트 2채 보유)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 체크포인트

소득세법 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2의3)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로 판단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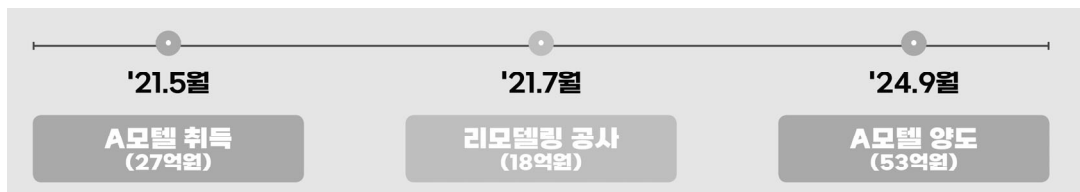
관련 법령(소득법§88 및 소득령§152의3)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함
-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30세 미만 미혼자 : ① & ②
 - ①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¹⁾이 기준 중위소득²⁾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 1)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만 포함) 등
 - 2)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예 : '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2,392,013, 원)
 - ②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관련 판례(대법원-2005-두-8443, 2005.12.23.)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 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03. 증빙없는 공사비나 집가비품처럼 해당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이몽룡씨는 '21.5월 취득한 A모텔을 리모델링하여 '24.9월 양도함
 - 이몽룡씨는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공사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계약

서 상 공사비용 18억원 전부를 필요경비로 신고함

- 국세청은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공사비용 6억원과 건물의 가치증가와 관련 없는 공사비용 4억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 양도소득세 : 추징 457백만원 (필요경비 10억원 부인)

조사내용

- 국세청은 계약서 상 공사 금액이 실제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 시 집기 비품 등이 함께 교체되었고 공사비용에 집기·비품의 구매대금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몽룡씨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리모델링 공사비 중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공사비용과 집기·비품 구매대금 등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 소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 체크포인트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또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지출하는 수선비 등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소득법§97, 소득령§163)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자본적 지출)으로

- 지출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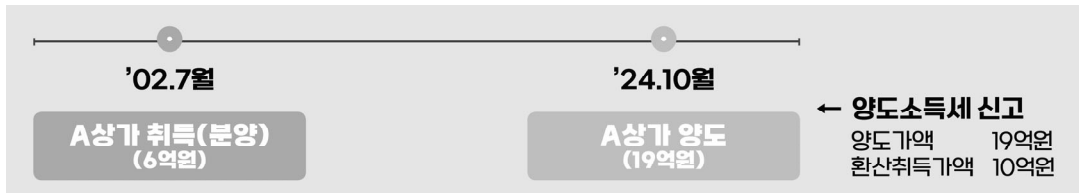
* 지출에 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비교(양도소득세 집행기준 및 심판례)

구분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개념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을 위한 지출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	X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베란다 샷시 비용 • 냉난방시설의 설치·교체 공사비용 • 방·거실 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발코니 샷시 공사비 • 방, 거실 바닥교체 공사비용 등 •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공사비용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지, 장판, 싱크대, 주방가구 교체비용 •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교체비용 •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마루 공사비 등

04.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공제할 수 없음



- 한누리씨는 '02.7월 A상가를 분양받아 '24.10월 양도함
 - 한누리씨는 취득한 지 오래된 A상가의 취득가액(분양가액)을 과세당국이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의도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함

$$* \text{양도가액} \times \frac{\text{취득 시 기준시가}}{\text{양도 시 기준시가}}$$

- 국세청은 A상가의 실제 분양가액이 6억원임을 확인하여 환산취득가액(10억원)을 부인하고 실제 취득가액 (6억원)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 * 양도소득세 : 추징 129백만원 (취득가액 4억원 부인)

조사내용

- 국세청은 A상가의 취득 당시 분양계약서 및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등을 통해 실제 취득가액인 분양가액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분양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장부 상 분양금액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이 제출받은 분양계약서 상의 분양가액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 국세청은 한누리씨가 신고한 A상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제 확인된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 체크포인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과세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소득법§97, 소득령§163)

-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아래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 ① 매매사례가액 : 취득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산과 동일성·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가액
 - ② 감정가액 : 취득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의 경우에는 1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
 - ③ 환산취득가액 : 양도할 때 거래한 실지거래가액 등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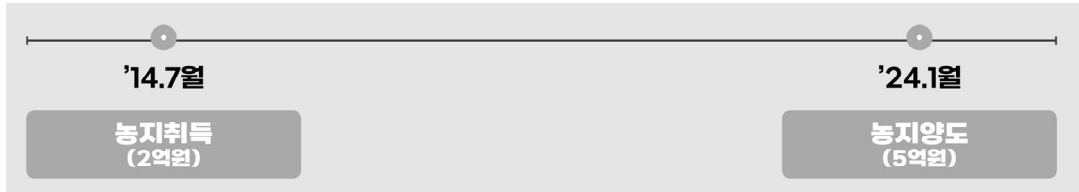
$$\text{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times \frac{\text{취득 당시의 기준시가}}{\text{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관련 판례(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759, 2016.07.06.(국승종결))

- 이 사건 부동산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을 전제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

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05.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 보유하던 농지를 양도한 성춘향씨는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 국세청은 성춘향씨가 해당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 ※ 양도소득세 : 신고 0원 (자경감면O) → 추징 107백만원 (자경감면X)

조사내용

- 성춘향씨는 농산물 판매내역, 농기자재 및 농약·비료 구입내역 등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 항공사진, 로드뷰(거리뷰) 등에 의하면 해당 농지는 예전부터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고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등 농작물이 경작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인근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서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이 경작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 하였습니다.
 - ⇒ 국세청은 성춘향씨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 체크포인트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인접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1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이 가능한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농지대장, 자경증명 확인, 묘종 등 구입내역, 농약 비료 등 구매내역, 현장사진 등으로 실제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9, 조특령 §66)

- (개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 (요건) 다음의 요건 충족하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 적용
 - ① (거주자)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일 것(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
 - ② (거주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ㄱ.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ㄴ. ㄱ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ㄷ.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 ③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
 -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2분의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함
 -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

구분	기준금액	비고
총급여액 (소득법 §20②)	연간 3천 7백만원 ¹⁾ 이상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①, ②, ③의 소득은 제외함 ①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법 §19①)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법 §45②) ③ 농가부업소득(소득령 §9)
사업소득금액 (소득법 §19②)	연간 3천 7백만원 ¹⁾ 이상	
총수입금액 ²⁾ (소득법 §24①, 소득령 §208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5억원 이상 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원 이상	

1) 3천 7백만원 요건은 '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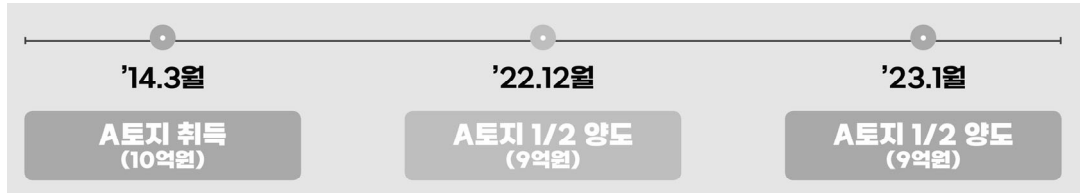
2) 총수입금액 기준은 '20년 귀속분부터 적용

- ④ (농지 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

● (감면의 종합한도) 1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06.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



- 홍길동씨는 동일한 양수자에게 A토지의 절반은 '22.12월에, 나머지 절반은 '23.1월에 양도하여 과세기간별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 감면의 종합한도 : 1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 국세청은 홍길동씨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과세기간을 달리해 형식상 두 차례로 나눠 양도한 거래임을 확인,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 ※ 양도소득세 : 신고 49백만원 → 결정 190백만원 (추징 141백만원)

조사내용

- 매매계약서에는 1차거래의 잔금일이 '22.12월, 2차거래의 잔금일은 '23.1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1차·2차 거래의 매매대금 잔금이 '23.1월에 한번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양수자는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할 의사가 없었으나 양도자인 홍길동씨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를 두 개로 나누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 ⇒ 국세청은 홍길동씨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거래한 것으로 보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 체크포인트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행위·거래로 보아 과세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관련 법령(국기법§14)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

관련 판례

- 대법원-2021-두-57780, 2022.03.11.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부산고등법원-2021-누-10982, 2022.01.19.(국승종결)
이 사건 제1, 2지분의 양도는 하나의 거래 즉,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총 0억원’으로 정한 매매로서 그 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분할하여 이행하기로 한 것이므로, ... (중략) ... 즉,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는 이상 그 거래가 분할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 전체가 완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분할 이행된 각 부분에 대하여 각 양도시기를 판단할 것은 아님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한 명	4월 4일(금)	4월 7일(월)	4월 8일(화)	4월 9일(수)	4월 10일(목)
미 달 러 (USD)	1467.00	1439.30	1465.90	1470.20	1482.90
일 본 엔 (JPY)	1006.00	992.45	990.91	1008.61	1004.81
영 국 파 운 드 (GBP)	1920.67	1855.04	1866.68	1878.84	1900.71
캐 나 다 달 러 (CAD)	1041.53	1010.64	1029.53	1031.03	1051.37
홍 콩 달 러 (HKD)	188.61	185.14	188.69	189.20	191.06
위 안 화 (CNH)	200.70	198.42	200.00	200.18	200.82
유 로 화 (EUR)	1620.89	1582.15	1600.10	1613.10	1624.22
호 주 달 러 (AUD)	926.85	862.43	879.47	874.92	910.43
싱 가 폴 달 러 (SGD)	1098.84	1069.75	1083.76	1086.26	1105.07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30.26	324.39	327.21	327.37	329.83

美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대책 발표

- 기획재정부, 2025. 3

- 긴급 유동성 3조원 신규 지원(정책자금 2조원, 현기차 상생자금 1조원)
→ ‘25년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은 기존 13조원 → 15조원 확대
-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 보조금 연장(‘25.6→12월) 및 지원비율 확대(20~40→ 30~80%)
- 수출바우처 1,000억원 이상 추가,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등 제도 연말까지 연장
- 자율주행 국가전략기술 지정, 친환경 생산시설 조세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 확충

정부는 4.9일(수) 08: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美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 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불, 자동차 부품 82억불에 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오늘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① 기업 경영위기 지원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기존 ‘25년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또한,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25년 2,500



억원)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이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 연장, 관세는 최대 1년 연장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신 관세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 대응 119(코트라)’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3월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② 수요진작, 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美 관세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대응 및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금년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편,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 예산을 대폭 확대('25년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한도 최대 2배 상향 및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를 당초 '25.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③ 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R&D 등에 금년 24.3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한다.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지원한다. 레벨4 이상 자율

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25.上)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5~’29)」(’25.3분기)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천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4 美 관세 조치 협상대응 강화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하여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요약)

1. 안건 주요 내용

1 美 관세 조치 및 영향

□ (내용) 자동차·부품* 관세 25% 부과(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 승용차, 경량 트럭 및 엔진부품, 동력전달부품, 전자부품 등

- (예외) USMCA 충족 자동차·부품은 미국산 비중 제외 후 부과
- (부과시기) 자동차 4.3일, 자동차 부품 5.3일

□ (영향 및 평가) 완성차사 이익감소, 부품사 3重苦 등 상당한 피해 예상

- 우리 자동차 對美 수출액은 전체 자동차 수출액(708억불)의 49%(347억불)로(자동차 부품 82억불), 업체별 미국내 생산비중 감안시 우리업계 상대적 불리

2 대응 필요성

□ 미국 관세는 우리 자동차업계, 특히 중소 부품업계 경영에 심각한 위협

- 국내 2만여개 자동차 부품사 대부분 충격 흡수 여력 부족

- 대미 수출 위축, 관세 부담, 생산·일자리감소 등 연쇄적 수요 충격 우려
 - 현대차 현지생산 확대(現 70→120만대), 한국지엠 생산차량의 86% 미국向
- 국내 생산기반 유지·강화 위한 투자 환경개선 및 기술경쟁력 확보 긴요
 - 환경규제, SDV, 자율주행 등 기술경쟁력 강화, 원가절감 노력 필요
-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 확보를 위한 대미 협상 지속

- 현 시점에서 관세 충격에 따른 구체적 피해 추산은 어려우나, 우리 기업들에 본격 파급되기에 앞서 '실효성있는 산업 안전망' 마련 필요
- 지원의 틀은 촘촘하게, 지원 규모는 피해상황과 대미 협상 경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책을 필요한 시기에 마련·이행
- ※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이행 세제, 정부 지원 확대 등 요청
- * (산업부 장관) TF, 산경장, 간담회, (산업부 1차관) 자동차 순회 현장방문

3 주요 정책 과제

1. 기업 경영위기 지원

- (긴급 유동성 확대) 정책금융 2조원 추가 공급(13→15조원, 필요시 확대 검토)·금융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중기부 및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 이자 경감 지원산업부
- (세정지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관세 최대 1년 연장,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대한 신속검토 등 적극 지원국세청
- (상생협력) 현기차 협력 중소기업에 '25년 1조원 지원프로그램 가동
- (관세 정보지원) KOTRA 관세대응 119산업부, 애로신고센터중기부·관세청, 전국 릴레이 상담회 개최산업부·중기부를 통해 중소기업 애로 신속 지원
- (공정거래 환경 조성) 불공정거래신고센터(70개)의 모니터링 강화 및 공정거래 캠페인 추진중기부, 완성차-부품업계간 자율 협력 유도동반위

2. 수요진작, 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국내 수요 진작]

- (전기차 보조금) 제조사 할인액 비례 보조금 매칭비율 상향(20~40→30~80%) 및 연장(~'25.6→12월)환경부
- (개소세 감면) 신차 구매시 개소세 탄력세율(5→3.5%, ~'25.6) 적용 및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70%, ~'25.6), 필요시 추가 지원 검토기재부
- (공공부문 조기 구매) 업무차량 상반기70%, 3분기100% 구매 유도산업부

[글로벌 신시장 개척]

- (FTA 활용) 협정 조기 발효, 전략지역 수출 안내 등 신시장 진출 지원산업부
- (수출 3중세트) ①수출 바우처('25년, 2,400억원) 대폭 확대(+1,000억원 이상)산업부·중기부 등, ②무역보험 확대(한도 최대 2배, 보험료 60% 할인) 연장('25.6→12월)산업부, ③전용 선박 제공, 임시선박 투입, 공동 물류센터 확대해수부·산업부
- (해외진출) 자동차부품 수출지원사업(전시회 등) 확대, 현지 맞춤 기술개발·사업화 추진('25년, 202억),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지원(신규 600억)산업부·중기부
- (위조부품 해외 유통 차단) 현지 실태조사 및 식별교육 등 단속 집행력 제고특허청 및 FTA 협상시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 강화산업부

3. 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국내 투자환경 개선]

- (세액공제 확대) 자율주행 등 기술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기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 적용 자동차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 확대산업부·기재부
- (국내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25년, 2,000억원) 신속처리산업부, 국내 투자지원 TF 구성 → 인허가 등 밀착지원산업부

[기술경쟁력 확충]산업부

-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 수립('25.3Q) 및 「자율주행 로드맵」 마련('25.上)
- 자동차 산업 초격차 기술개발 등 예산('25년, 4,990억) 대폭 확대
-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25년, 300억)'로 생산성 제고, 부품기업 '솔루션100 자문



단' 구성·운영 및 미래차 특화 전문기업 100개 육성

4. 미 관세 조치 협상대응 강화

⇒ 대책을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면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필요한 대책도 적기에 보완·추진

1. 美 관세 조치 및 대응 필요성

관세 조치 및 영향

□ (품목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자동차·부품 관세 25% 부과(4.3일)

- (대상) △승용차(세단, 미니밴 등), 경량 트럭 및 △특정 자동차부품*
 - * 특정부품: 엔진 및 엔진부품, 변속기 및 동력전달부품, 전자부품
 - 예외: USMCA 충족 자동차부품의 경우 미국산 비중 제외 후 부과
 - * USMCA 충족 부품은 관세적용 절차 수립시까지 관세 부과 유예(시점 미정)
- (부과시기) 자동차 4.3일, 자동차 부품 5.3일

□ (영향 및 평가) 완성차사 이익감소, 부품사 3重拷 등 상당한 피해 예상

- 우리 자동차 對美 수출액은 전체 자동차 수출액(708억불)의 49%(347억불)
 - * '24년 기준, 자동차 대미 수출액 347억불(143만대), 자동차 부품 82억불
 - 품목관세는 맥·캐·일·EU 등에도 동일 부과되나, USMCA 충족시 예외, 업체별 미국내 생산량 비중* 등 감안시 우리업체가 상대적 불리
 - * 미국 판매량중 생산량 비중(%): (GM) 63, (도요타) 49, (현대차) 42, (포드) 101
 - 부품사는 △관세, △완성차사 부담 전이, △수요위축 등 복합충격 예상
- 전문기관은 관세 25% 부과시, 자동차 대미 수출액 65억불 감소, 완성차사 영업이익 약 10조원 감소 추정
 - * (IBK연구소) △65억불(수출액), (SK증권) △10.7조원, (iM증권) △9.7조원
 - 다만, △경쟁사 가격정책, △소비자가 반영률, △한미간 생산 비중, △기업별 관세 감내 여력 등에 따라 실제 기업별 영향 상이 전망

대응 필요성

- 미국 관세는 우리 자동차업계, 특히 중소 부품업계 경영에 심각한 위협
 - 국내 2만여개 자동차 부품사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영업이익률도 제조업 평균 대비 저조하여** 충격 흡수 여력 크게 부족
 - * 매출 100억원 미만 88%, 종사자 100인 미만 98%(’24년 부품산업 실태조사, 21,443개社 대상)
 - ** ’23년 영업이익률(%): (제조업 평균) 3.3, (완성차) 9.6, (부품, 1차사) 2.9%

- 대미 수출 위축, 관세 부담, 생산·일자리감소 등 연쇄적 수요 충격 우려
 - 현대차는 현지생산 확대(現 70 → 120만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한국지엠은 생산차량의 86%가 미국向으로 심각한 타격 가능성 우려
 -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는 협력사 주문 감소,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국내 산업 생태계 위협(’23년 자동차산업 생산 290조원, 제조업의 15%)

- 국내 생산기반 유지·강화 위한 투자 환경개선 및 기술경쟁력 확보 긴급
 - 통상, 환경규제*, SDV, 자율주행 등 패러다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등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필요
 - * EU 내연차 판매금지(’35~), 배출가스 기준강화(Euro7, ’27~), CBAM 품목확대 전망(’30~) 등

-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 확보를 위한 대미 협상 지속
 - 對美 투자(현대차 210억불, 배터리 560억불 등), 자동차 관련 비관세조치(환경기준 등) 개선 등 미국경제 기여와 동맹협력 강조

시사점

- 현 시점에서 관세 충격에 따른 구체적 피해 추산은 어려우나, 우리 기업들에 본격 파급되기에 앞서 '실효성있는 산업 안전망' 마련 필요
- 지원의 틀은 촘촘하게, 지원 규모는 피해상황과 대미 협상 경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책을 필요한 시기에 마련·이행
- ※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이행 세제, 정부 지원 확대 등 요청
- * (산업부 장관) TF, 산경장, 간담회, (산업부 1차관) 자동차 순회 현장방문

참고 자동차산업 현황('24년 기준)

□ (세계시장) 9,157만대이며, 中(3,143만대, 34%) → 美(1,646만대, 18%) 順

< '24년 자동차 시장 판매규모(단위 : 만대) >

구분	중국	미국	EU	기타	전세계
규모 (비중)	3,143 (34%)	1,646 (18%)	1,215 (13%)	3,153 (34%)	9,157 (100%)

□ (미국시장) 1,600만대이며, 수입 800만대, 생산 1,000만대(수출 200만대)

- 자동차 무역적자는 1,971억불이며, 멕시코(887억\$) → 일본(396억\$) → 한국(345억\$) 順

< 미국의 국가별 자동차 교역현황(단위 : 억\$, 미국통계 기준) >

구분	멕시코	일본	한국	독일	기타	합계
수입	952	404	367	251	547	2,689
수출	65	8	21	76	715	717
수지	△887	△396	△345	△175	△168	△1,971

□ (한국시장) 국내 생산 413만대 등 총 777만대(해외 365만대) 생산

* 업계 순위('24년, 만대) : [1위]도요타 1,017 - [2위]폭스바겐 855 - [3위]현대·기아차 699 順

- 국내 생산 413만대 中 수출 278만대, 내수 135만대(수입 28만대)
- 대미 수출은 143만대로 전체 수출 중 52% 차지
- 특히, 한국지엠은 생산 49만대 中 86%인 42만대를 미국에 수출

□ (국내 부품업계) 국내 생산 138조원('23년) 中 대미 수출 82억불

- 약 2만여개 업체가 있으며, 95% 이상이 매출액 300억 미만의 영세 업체('24년 부품산업실태조사 결과)

< 매출액 구간별 부품 사업체 수 (단위 : 억\$, 미국통계 기준) >

구분	5억 미만	5억~ 10억미만	10억~ 100억미만	100억~ 300억미만	300억 이상	합계
사업체 수 (비중)	6,398 (29.8%)	4,717 (22.0%)	7,690 (35.8%)	1,951 (9.1%)	686 (3.2%)	21,443 (100%)

II. 주요 정책과제

- ◇ 4.3일 자동차 25% 관세 부과에 따른 자동차부품 산업계 피해 최소화 및 생산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긴급대책 필요
- ◇ ①기업 경영위기 지원, ②시장충격 대응, ③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④對美 관세 협상 강화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

① 기업 경영위기 지원

- ◇ 16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정책금융 15조원, 상생 1조원)
- ◇ 관세피해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정보지원 등 강화
- (긴급 유동성 확대) 자동차산업 정책금융 13조원* → 15조원 확대
 - * '25년 당초 정책금융 공급 계획(미래차 육성 5조원, 자동차 부품전환 8조원)
 - 자동차 부품 관세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책금융 2조원 추가공급금융위
 - 정책금융 소진율, 기업 수요 변화 등 고려해 추가 확대 검토
 - 관세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25년 2,500억원) 지원 확대중기부
 -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 (한도) 업체당 10억원
 - 미래차 전환 투자에 대출·이차보전으로 부품기업 이자부담 경감산업부
 - * (이차보전율) 중소 2%p, 중견 1.5%p, (한도) 업체당 100억원(총 3,200억원)
 -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확대 추진
- (세정지원) 관세 피해기업이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최장 9개월 연장, 관세는 최대 1년 연장 지원국세·관세청
 - 관세 피해기업의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대해 신속검토 등 적극 지원
- (상생협력) 현기차 협력 중소기업에 '25년 1조원 지원프로그램 가동
 - 현기차와 금융권 5:5로 총 460억원 출연, 기보·신보·무보의 보증지원 → 7,900억원 대출 또는 보증
 - 현기차 70억원 출연, 신보 보증 → 최대 2,250억원 규모 P-CBO 발행
- (중소기업 관세 정보지원) KOTRA 관세대응 119('25.2월-)를 통해 관세 확인, 맞춤상담, 수출지원사업 연계까지 단계별 통합 지원산업부
 - * (대표번호) 1600-7119, KOTRA 홈페이지 내 별도 상담창구 팝업 신설

- 애로신고센터(전국 중소기업청 15개)를 통해 관세피해 신속 지원중기부·관세청
 - * 중기부 : 비즈니스지원단 관세사 상담지원, 관세청 공익관세사 연결('25.4월~)
 - 관세청 : 전국 세관 20곳에 공익관세사 배치, 애로신고센터 피해접수 내용 상담('25.4월~)
- 美 관세정책 동향 및 지원책에 대해 전국 릴레이 상담회 개최산업중기부
 - * (강원) 3.12, (서울) 3.27, 4월말, (경기) 4.2, 4.9, (충청) 4.3, 4.11, (전라) 4월중, (경상) 4월말
- (공정거래 환경 조성) 완성차-협력사간 합리적인 관세부담 조정을 위해 불공정거래신고센터(70개)의 모니터링 강화 및 공정거래 캠페인 추진중기부
 - 합리적 단가 조정을 위한 완성차-부품업체간 자율 협력 유도동반위

2 수요진작, 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 [국내 수요 진작] 소비자 구매 인센티브 강화, 공공부문 구매 확대 등을 통해 국내생산 충격을 적극적으로 완화

-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환경부
 - 기업 할인액에 비례한 추가보조금 기한을 연장(~'25.6→12월)하고, 기업 할인노력과 연계하여 매칭비율 상향(20-40→30-80%)

< 기업 할인연계 전기차 보조금 >

구분	현행(~'25.6)		개선(~'25.12)	
	기업할인	매칭비율	기업할인	매칭비율
일반 (4.5~5.3천만)	0~500만원	20%	0~500만원	30%
	500만원~	40%	500~700만원	50%
	-	-	700만원~	80%
보급 (4.5천만 미만)	0~200만원	20%	0~200만원	30%
	200~400만원	40%	200~400만원	50%

- 개별소비세 감면
 - 신차 구매시 개소세 탄력세율(5→3.5%, ~'25.6) 적용 및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70%, ~'25.6), 필요시 추가 지원 검토기재부
 - * (노후차 기준) '14.12.31일 이전 신규 등록 및 '24.12.31일 등록 유지
- (공공부문 조기 구매) 업무차량 상반기70%, 3분기100% 구매 유도산업부
 - ※ '24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중 765개 기관이 약 1만대(친환경차, 내연차 각 5천대) 교체 실적

◇ [글로벌 신시장 개척] 자동차 시장이 성장중인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기회 확대 중점 지원

※ 글로벌 사우스는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16.7%, 연평균 9.1% 성장 중

<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 진출 전략 > * 2천CC이하 자동차 관세율 기준

구분 / 주요국(시장규모)	주요 현황	관세율*	진출 지원 방향
아세안	인니 (86만대) · 국내 완성차 생산능력 15만대 · 국내 부품수출 아세안 2위 · 아세안 역내 무관세 혜택(RCEP 활용)	0%	· 현지 가동률 상향 · 아세안 역내 생산 허브로 활용
	필리핀 (47만대) · '24년 FTA 체결 및 발효('24.12.31일)	0% (~'28년)	· 신규 진출 대비 인증획득 지원 및 표준협력 강화
인도 (523만대)	· 국내 완성차 생산능력 118만대 · 국내 부품수출 세계 6위(12억불) · 세계 최고 수준 관세로 현지생산 우세	125%	· 엄격한 관세정책에 대응 관세 컨설팅 우선 지원
중동	사우디 (38만대) · 국내 완성차 생산능력(5만대) 예정('25년 착공) · 국내 부품수출 중동 2위	5%	· 홍해 사태 장기화 등 물류 애로 지원
	UAE (17만대) · '23년 CEPA 타결 · 국내 부품수출 중동 1위(3.5억불)	0% (~'34년)	· CEPA 조기 발효 · 현지 법인 부품수요 맞춤형 R&D 우선 지원
중남미	브라질 (363만대) · 국내 완성차 생산능력 22만대	20%	· 중남미 진출 거점 활용
	멕시코 (155만대) · 국내 완성차 생산능력 40만대	20%	· 한멕시코 FTA 체결 추진

□ FTA 활용 신시장 진출 확대산업부

- 한-필리핀('24.12월 발효) 맞춤형 R&D 및 「자동차산업 진출전략」 안내서 발간(코트라)
- 한-UAE, 에콰도르('23년 타결) 협정 조기 발효 추진(연내 목표)
 - * (UAE) 관세 5%, 10년 내 철폐, (에콰도르) 관세 최대 40%, 15년 내 철폐
-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조속 추진(상반기 중 합의 목표)
- 원산지 관리, 사후검증 등 통관애로 해소(부품조합) 및 수출 전문교육*
 - * 「FTA활용센터(대한상의)」, 「TradeNavi(무역협회)」, 「YES FTA(관세청)」 온·오프라인 교육중



□ 대체 시장 확보를 위한 수출 3중세트 지원

- (수출 바우처) 「관세대응 바우처」 등 수출 바우처*(’25년 2,400억원) 대폭 확대 (+1,000억원 이상) 및 물류비 한도 상향(3 → 4천만원)산업·중기부 등
 - * (대상) 美 관세 피해(우려) 기업 등
 - (지원내용) ① 피해분석, ②피해대응, ③생산거점 이전, ④대체시장 발굴 등
- (무역보험)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 확대 및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적용 연장 (~’25.6월 → 12월)산업부
 - *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부담은 수출 100만불 당 650만원 수준 절감 가능
- (물류) 부품기업 전용 선복 제공* 및 물류 경색시 임시선박 투입해수·산업부
 - * 지원절차 : 자동차 업계 등 노선별 수요조사(무역협회, ’25.4월) → 참여기업 신청(’25.5월) → 참여기업·국적선사간 계약 체결(6월) → 선복 제공(’25.7월~)
- 북미 공동물류센터 확대(45→50개)* 및 부품기업 우선 지원산업부
 - * 현지 물류사 창고 공동 활용, 시카고, LA, 뉴욕, 실리콘밸리, 워싱턴 등 5개 신설

□ 해외 공급망 진입 지원

- 해외 OEM 등 부품 수요처 대상 자동차 부품 수출지원사업 강화(FTA 활용 연계성 높은 국가 중심)산업·중기부
 - * 태국·인도전기차·부품 무역사절단(3월), 브라질차부품 전시회(4월), UAE·두바이차부품 전시회(12월) 등
-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공급망 진입 지원을 위해 현지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실증·사업화 추진(’25년, 202억원)산업부
-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 설립·운영에 대한 정책자금 신설(’25년 600억원)중기부

□ 자동차 위조부품 해외 유통 차단

- ※ H社 짝퉁부품 중국·인도 등 확산 → 年 100억원 피해(기업 추산), 브랜드 신뢰 위협
- 현지 실태조사 및 식별 교육* 등을 통해 단속 집행력 제고특허청
 - *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 해외 지재권 단속 공무원 초청교류(중국·베트남, ’25년), 우리기업 주요 브랜드와 가품 식별방법 등 소개를 위한 현지 설명회 개최(8회, ’25년) 등
- FTA 협상시 지재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권리 구제 수단 강화산업부
 - * (국경조치) 침해물품 통관보류, 몰수·폐기, (민·형사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③ 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 [국내 투자환경 개선] 자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한 바,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개선

- 미래핵심투자 세액공제 확대
 - 자율주행 등 자동차 기술을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추진기재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시설투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 확대산업·기재부
 - * (現)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친환경산업법)'에 자동차 도장 친환경기술 포함 → (改) 차체, 의장 등 여타 생산공정의 친환경기술 추가(산업부 고시(산업환경실천과제) 개정)

- 국내 투자환경 개선
 -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25년 2,000억원) 신속 처리(외투위원회 要)산업부
 - 국내 투자지원 TF(산업부) 구성 및 인허가 등 밀착 지원산업부

◇ [기술경쟁력 확충] 미국 및 신시장에서의 치열해진 경쟁구도를 감안,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원가 절감, 자율주행 기술개발 고도화 긴급

-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5~'29)」 수립('25.3Q)산업부
 - * 미래차 부품산업 특별법 시행('24.7월) →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최초 계획 수립
 - '27년 Lv.4 상용화 목표로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 마련('25.上)
 - Lv.4 이상 자율차도 정부 안전성 인증 거쳐 판매 허용(자율주행자동차법(국토부), '25)국토부

- 자동차 산업 초격차 기술개발 등 예산('25년 4,990억원) 대폭 확대산업부
 - △친환경, △고성능 AI 반도체*, △SDV 등 미래차 플랫폼** 집중 투자
 - * AI가속기 반도체 개발('25~'28, 국비 290억)/초고속 통신반도체 개발('25~'28, 국비 288억)
 - ** 미래모빌리티 차세대 전자아키텍처 개발('23~'26, 국비 240억원)
 - 데이터보안 규제 대응*, 소비자 체감 및 안전 기술개발('25, 1,700억원)
 - * 美커넥티드카 규칙(상무부, 1.14 발표) SW는 '27년 모델, HW는 '30년 모델부터 적용

- 미래차 전환 지원 및 AI 적용 생산성 고도화산업부
 -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로 자동차 등 공정 생산성 제고('25, 300억원)
 - * AI 기반 로봇·장비 등을 제조공정에 결합하는 프로젝트, 현대차·성우하이텍 등 참여중
 - 부품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솔루션100 자문단 구성·운영('25.上)
 - * 100명 규모로 ▲탄소저감, ▲안전편의(자율주행·안전기술 등), ▲소재기술·생산 등 전문 컨설팅
 - 미래차 중책기업으로 '27년까지 미래차 특화 전문기업* 100개 육성
 - * (요건) 미래차 매출 50% 이상 등, (절차) 지원신청 및 전담기관 실사 등, (지원) 기술사업화, 특화단지 우선입주 추천, 해외진출, R&D 우대 등 지원



④ 美 관세 조치 협상대응 강화산업부

- ◇ 범정부 對美 협상 지속, 한-미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에 최선의 노력

Ⅲ. 추진일정

- 주요 대책 즉시 추진 → 업계 전파를 통해 실효성 제고
- 관계부처 합동 주요과제 점검회의 매분기 개최(산업·기재·환경부 등)

과제	주관/협조
기업 경영위기 지원	
· 자동차산업 정책금융 2조원 추가공급(필요시 확대 검토)	금융위
·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관세피해 부품기업 등 지원	중기부
· 미래차 전환투자 대출·이차보전 지원	산업부
· 세정지원	국세청·관세청
· 관세대응 정보지원 및 상담	산업부·중기부
· 완성차-부품사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중기부/동반위
2. 수요진작, 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환경부
· 신차구매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등(필요시 추가지원 검토)	기재부
· 공공부문 조기구매 유도	산업부
· FTA 활용 신시장 진출 확대	산업부
· 관세대응 바우처 등 수출 바우처 대폭 확대 및 물류비 한도 상향	산업부·중기부 등
· 무역보험 한도 확대, 단기수출보험료 할인 연장	산업부
· 부품기업 수출 물류 지원	해수부·산업부
· 수출지원사업 등 해외 공급망 진입 지원	산업부·중기부
· 국산 자동차 위조부품 유통 방지	특허청·산업부
3. 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 자율주행 등 자동차기술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추진	기재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규제 개선	기재부/산업부
·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신속검토 등 국내 투자환경 개선	산업부
·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5~’29)’ 수립	산업부
·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 마련	범부처
· Lv.4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국토부
· 자동차 산업 초격차 기술개발 등	산업부
·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자동차 등 분야)	산업부
· 솔루션100 자문단 구성·운영	산업부
· 미래차 특화 전문기업 100개 육성	산업부
4. 美 관세 조치 협상대응 강화	산업부